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7. 3. 27.
- 제공자 :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
- 과 장 : 조 원 량
- 사무관 : 안 형 덕
- 전 화 : 500-1812

이 자료는 2007년 3월 2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「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」와 「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」 도입된다
-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

□ 농림부는 「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령」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“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”와 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”가 처음 도입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공포된 「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

첫째.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 종류가 간소화 된다.

- 종전 : 유기농산물, 전환기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
- 개정 :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(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), 저농약농산물
- * 종전의 “전환기유기농산물” 인증종류는 삭제됨

둘째.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.

- 그동안 무항생제로 표시된 축산물이 일부 유통되어 왔으나,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별로 사육기준이 각기 달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.

- 이번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,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되며,
- 미인증품에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축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셋째. 「친환경농산물을 생산」하거나 「수입하는 자」 외에 「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」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된다.

- 「재포장하는 자」로 인증을 받을 경우 유통단계에서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인의 역할이 증대되어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넷째. 「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」가 도입된다.

- 그동안 시중에 많은 친환경자재가 유통되어 왔으나 실제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농업인이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.
- 따라서,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자재의 성분 등을 검토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재의 목록을 농촌진흥청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(公示)하게 되며, 농업인은 공시된 자재에 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 친환경유기농자재 선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.

- 새로 도입된 “무항생제축산물”과 “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”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3.28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및 인증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며,
 - “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”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.

-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이전보다 높아지고,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.

< 참 고 >

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주요 개선내용 (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관련)

1.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 간소화

□ 현행제도

-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방법·사용자재 등에 따라 4종류로 인증함에 따라 종류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

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

- 4종류로 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를 3종류로 축소
 - 현행 : ①유기, ②전환기유기, ③무농약, ④저농약농산물
 - 개선 : ①유기, ②무농약(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), ③저농약농산물

< 기대효과 >

- 친환경농산물 분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해소되어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
2.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도입

□ 현행제도

-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무항생제 등 표시
 -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왔으나, 사육방식이 농가별로 다름
 -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‘무항생제축산물’ 이라는 표시를 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음

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

-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 시행
 - 사료에 항생·항균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, 사육기준 등을 지킨 경우 ‘무항생제축산물’로 인증
 -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“무항생제축산물”이라는 표시를 하지 못함

< 기대효과 >

-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가능
- 종전에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무항생제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인증받은 경우에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미달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

3.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허용

□ 현행제도

-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만 인증신청 허용
 - 판매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포장단위를 임의로 바꾸거나, 내용물을 혼합할 수 없어 소비자에게 불편초래

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

-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허용

< 기대효과 >

-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「재포장하는 자」로 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어 유통인의 역할이 증대되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

4. 「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」 도입

□ 현행제도

- 유기농산물 재배시 화학비료, 합성농약은 사용할 수 없고, 친환경 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에 계기된 자재만 사용을 허용
- 많은 친환경유기농자재가 유통되고 있으나, 어느것이 별표1에 해당되는 자재인지를 농업인이 판단하기 어려워 자재선택 곤란
 - 농업인이 자재의 성분을 분석할 수 없고,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갖추지 못함

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

- 농촌진흥청에서 유통되는 자재를 검토하여 별표1의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로 판단되는 경우 그 자재의 목록을 공시(公示)
 - 농촌진흥청·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을 공개하면, 농업인은 공시목록을 참조하여 자재선택

< 기대효과 >

-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목록을 공신력있는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에 따라 농업인의 친환경농자재 선택이 쉬워지고, 자재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

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현황 및 표시기준

1. 년도별 생산동향

구 분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
농가수(천호)	2	5	12	23	29	53	80
면 적(천ha)	2	5	11	22	28	50	75
생산량(천톤)	35	87	200	365	461	798	1,128
전체농산물 대비 비중(%)	0.2	0.4	1.1	2.1	2.5	4.4	6.2(잠정)

2. 인증종류별 생산동향(2006년)

구 분	계	유기	무농약	저농약
농 가 수(천호)	80	7	22	51
면 적(천ha)	75	9	18	48
생산량(천톤)	1,128	96	320	712

3. 품목별 생산량(2006년)

계	곡 류	과 실	채 소	기 타
1,128천톤(100%)	171(15)	390(35)	424(38)	143(13)

4. 친환경농산물 표시 및 주요 인증기준

농약·화학비료를 사용하지
않고 재배한 농산물
(유기축산물)
항생·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은
유기시료 위주로 사육한 축산물

농약은 사용하지 않고
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/3이하로
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
(무항생제축산물)
항생·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은
일반시료 위주로 사육한 축산물

농약과 화학비료를
기준량의 1/20이하로 사용하여
재배한 농산물(제초제 미사용)